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92 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김용태·조정훈·김성원

이종배 • 박준태 • 박 정

이기헌 • 박덕흠 • 김성회

박상혁 • 이성권 • 배준영

박정하 • 한기호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,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 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,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 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10조).

법률 제 호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 중 "발전종합계획안을"을 "제10조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전종합계획안을"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,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	제5조(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		
정) ① ~ ⑥ (생 략)	정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		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	⑦		
따라 제출받은 시・도발전계획			
안을 기초로 하여 <u>발전종합계</u>	제10조에 따른		
<u>획안을</u> 수립하고, 관계 중앙행	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		
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	청취한 후 발전종합계획안을		
협의 후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			
회의 설치・운영에 관한 법			
률」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			
문위원회(이하 "정책자문위원			
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			
정한다.			
⑧ ~ ⑪ (생 략)	⑧ ∼ ⑪ (현행과 같음)		
제10조(접경지역발전협의회) ①	제10조(접경지역발전협의회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회의		
	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, 필요		
	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		
	<u>다.</u>		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